## 114. 자동차 도장 전후 처리공에게서 발생한 견관절 극상근파열, 충돌 중후군.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

성별 여 **나이** 57세 **직종** 수송용기기계기구 **업무관련성** 낮음 제조업

- 1. 개요: 근로자 김OO은 도장부에서 샌딩작업, 마스킹 작업, 반광마스킹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6년 4월 상기 병명으로 진단 받았다.
-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김OO은 1978년 11월 1일부터 99년 9월까지 컨테이너 생산부에서 일하였고 컨테이너 용접한 부위를 브러쉬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1999년 10월부터 2003년 4월까지 불량부위 재도색을 위해 정상 부위를 4명이서 은박지로 재서 칼로 잘라서 싸는 마스킹 작업을 하였다. 2003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도어샤시에 반광마스킹 작업을 하였다. 2005년 5월부터 지금까지 불량 body 내, 외부를 사포를 이용하여 리페어하는 작업을 했다. 근로자의 작업자세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마스킹 및 리페어 샌딩작업시 신장이 작아 어깨를 뻗치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작업들에 대한 RULA 분석결과, 마스킹 작업은 위험수준이 보통/매우 높음으로 조사되었는데, 차체 상단/내부 마스킹 작업의 RULA 최종 점수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분석되었다. 리페어 샌딩작업은 차체의 상단 부위에 대한 연마작업시에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차체 측면에 대한 연마작업시에는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광마스킹 작업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게 조사되었다.
- 3. 의학적 소견: 2005년 10월 초 리페아 전면 샌딩장에서 전면 바디 불량차 수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어가 닫히면서 우측 어깨가 도어 모서리에 부딪혀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6년 1월 6일 부속의원에서 견관절 염좌로 진단하고 치료를 받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서 2006년 3월 31일 OO병원에서 실시한 MRI와 2006년 4월 28일 실시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의심되어 2006년 5월 12일 관절경하 극상건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변연절제술 시행하였다.
- 4. 결론: 이상의 조사 결과 근로자 김〇〇은,
  - ① 오른쪽 어깨를 앞 도어에 부딪힌 이후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치료를 받기까지 3개월간의 기간이 있었고
  - ②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작업이 위험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 진찰 MRI소견에서 왼쪽도 오른쪽과 비슷한 소견을 보여 퇴행성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어

김OO의 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부관절와순 부분파열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